

소재 서재골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그 무렵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을 만나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관하여 논의하고, 동인으로부터 “해방 50주년을 맞이한 남북한 통일 관련 공동세미나에 북한에서는 사회과학원과 주체과학원 소속 학자 6~7명을 파견하겠으며, 회의장소는 제3국인 북경이 좋겠다”는 답변을 듣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후, 3. 11.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2) 위와 같이 중국 북경에서 「제1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동 학술회의의 정례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1995. 8. 5. 중국 북경에서 처 정정희 및 아들 2명과 함께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서재골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평양 시내 일원 등지를 관광하고, 그 직후 위 김경남, 김관기, 사회과학원 역사부장 리종현 등을 만나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정례화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후, 같은 달 27일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3)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예비회담에 참석한 후 위 회담에 참석하였던 위 김관기 등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1996. 3. 17. 중국 북경에서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서재골초대소에 1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위 김관기·김문일 등을 만나 「제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고, 같은 달 일자 미상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4) 위와 같이 중국 북경에서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한 후 위 회의결과를 북한에 보고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1997. 9. 2. 중국 북경에서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서재골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그 직후 위 김용순을 만나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개최상황을 보고하고, 차기 통일학술회의의 평양 개최 문제를 논의한 후, 9. 8.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5) 「제4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조기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1998. 1. 초순 일자 미상경 독일 베를린에서 항공편으로 북경을 경유하여 북한에 들어가 약 일주일동안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김관기 등을 만나 「제4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조기 개최 문제를 협의하여, 위 회의를 '1998. 2. 20.~2. 21. 북경 캠펠스키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한 후, 같은 달 초순 일자 미상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6) 위 사회과학원으로부터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9. 1.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서재골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김관기 및 성명미상의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 등을 만나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의 주제 선정과 참가 대상자 선별 문제 등을 협의한 후, 같은 달 18.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7) 위 사회과학원으로부터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9. 6. 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서재골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 등을 만나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의 주제 선정과

참가 대상자 선별 문제 등을 협의한 후, 7. 6.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8)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된 남북간의 협의가 북한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척되지 않던 중, 위 백영철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개최 예정인 '2000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북한에 간다는 연락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 위 회의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기로 마음먹고

2000. 4.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서재골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위 백영철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나 북한측의 초청 취소로 백영철의 입북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김경남·김관기 등을 만나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한 후, 4. 11.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9)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00. 12.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 등을 만나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를 2001년 2월이나 3월경 평양이나 금강산 호텔에서 개최하는 문제 등을 협의한 후, 12. 9.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10)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개최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협의가 북한측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진척되지 않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01. 5. 29. 중국 북경에서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경남·김관기 등을 만나 위 통일학술회의 개최문제 등을

협의를 한 후, 같은 해 6. 2.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11)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문제에 관하여 북한 당국자와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02. 6. 11. 독일 베를린에서 항공편으로 북경을 경유하여 북한에 들어가 위 고려호텔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정남·김관기 등 사회과학원 소속 북한학자 및 당국자들을 만나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를 평양과 서울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고, 6. 14.부터 6. 15.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후, 같은 달 18일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12) 그 직후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백영철 등에게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와 관련한 북한과의 협의결과를 통보하는 등 위 회의 개최를 준비하던 중, 위 백영철로부터 위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면 대한민국측에서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북한과 위 학술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02. 12. 7.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위 고려호텔에서 체류하면서, 위 김정남, 사회과학원 원장 태형철, 사회과학원 산하 철학연구소장 전하철, 역사연구소장 허정호 등을 만나 「제 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평양 개최 문제를 협의하여 2003. 1. 29.~1. 30. 북경에서 예비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14일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13) 2003. 3. 일자 미상경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에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 직후 북한으로부터

터 북한에 들어오라는 지령을 받고

2003. 3.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에서 체류하면서,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평양에 있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참석한 후, 4. 1.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감으로써

각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잠입·탈출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잠입·탈출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바85 결정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회합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각 통일학술회의는 대한민국측이 제안하고 주도하였으며, 우리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관계 당국과의 사전조율과 당국으로부터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남북 교류와 협력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측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이 사건 각 통일학술

회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방북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북한측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통일학술회의 개최를 위하여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측 관계자와 회합하였으며,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북한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에 관한 지령을 받았고 북한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측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주선하고 중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7. 7. 7.자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및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6. 21. 16:00경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소속 공작원 김경필로부터, “우리 대표부와 ‘범유본’(‘조국통일범민족연합유럽본부’ 지칭)을 비롯한 교포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 서거 3돐 추모회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고, 우리나라 대표부에서 조직하는 추모회(김일성 추모회)에 참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김경필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리는 편지는 곧 준비할 것이며 대표부에서 조직하는 추모행사에는 행사 직전에 먼저 대표부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 앞에 꽃다발을 드리겠다. 학

교수업과 시험문제 출제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조국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 나 대신에 나의 이름으로 꽃다발을 바쳐 달라.”고 말하면서 김일성 추모회 때 사용할 꽃구입비로 독일화 500마르크(한화 30만 원 상당)를 제공한 후, 위 김경필로부터 “송 선생이 10월경 학자토론회(‘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지칭)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으니 다시 구체적으로 안건을 제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김경필에게 “연초부터 내가 제기한 토론회에 대하여 조국은 현 정세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렇겠거니 생각하면서도 더 유리한 정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번에 토론회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다. 이번에 내가 제기한 토론회와 관련하여 조국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제기해 달라.”고 말하는 등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 문제를 수용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고, 이어서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30여년간 조국과 연계되어 일 해오고 있는데 조국과의 관계에서 윤이상처럼 조국에 대해 자신의 주견을 강하게 요구할 줄도 모르고 또 황석영처럼 조국에 가서 입으로 나팔을 불 줄도 모른다. 지난 시기 조국과 사업해 온 데 대해 총화해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 전에는 조국 일꾼들이 내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대해 주고 신속하게 연락을 보내오곤 하였다. 30여년간 연계되어 일해 온 나를 조국에서 멀리하면 나로서는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놓고 많이 생각하던 중이다. 나의 신분위장을 위하여 가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전에 조국에 다닌 사실이 공개되었고 또 북남간의 토론회도 주관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계속 가명을 쓰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조국에서는 나의 가명으로 되어 있는 문건들을 다 따로 정리하여 두고 이제부터는 나의 본명을 가지고 연계 연락을 해주기 바란다.”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

한 사실과 관련하여 신분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공작문건을 정리해 주고 향후 연락시 본명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등 신분보호 대책방안을 위 김경필을 통해 위 통일전선부에 요청한 후 김일성 추모식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1997. 7. 7. 18:00경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인 독일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에 들어가 그곳에서 개최된 '김일성 사망 3주기 추모식'에 처 정정희와 함께 참석하여, 김일성 초상화에 꽃다발을 헌화한 후 묵념하고, 위 김경필 등을 만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교통상부장관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사본(수사기록 18권 308면), 1994. 7. 1. 발급여권(수사기록 19권 944~961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3. 8. 18. 독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나, 나아가 북한이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주재하게 된 북한 이익대표부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인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에 들어간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탈출'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한 범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북한 이익대표부에 들어가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김

경필과 회합하였더라도 역시 이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될 수는 없고, 형법 제5조, 제6조에 정한 외국인의 국외 범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5조에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형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죄, 즉,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같은 법 단서에서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른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3. 5. 1. 선고 73도289 판결 참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89년경부터 1999년까지 국내의 친북세력들의 밀입북 투쟁 전개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 12.경 국내 월간지 <사회와 사상>에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북한 평가 및 이해를 주장하여,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외 친북 세력들 사이에 ‘북한 바로알기’라는 미명하에 1989년 「전국대학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임수경(한국외대)을 위시하여, 1991년 박성희(경희대)·성용승(건국대)이, 1994년 위 전대협을 계

승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최정남(서울대)이, 1995년 정민주(인천대 체적)·이혜정(카톨릭대)이, 1996년 류세홍(조선대)·도종화(연세대)가, 1998년 황선(덕성여대)·김대원(건국대)이, 1999년에는 황혜로(연세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나창순 등 5명이 밀입북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친북인사들이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광동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진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홍진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기고문이 이들의 밀입국 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1. 6. 29.부터 6. 30.까지의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북한 노동당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6. 29.부터 6. 30.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남·북한 및 해외교포 범민족대회」 준비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김일성 주석은 대단히 똑똑한

분이며, 북한주민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이는 남북분단의 결과로 북한주민은 이에 따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김일성 및 북한체제를 찬양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위 대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본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위 대회에 참석하여 북에 간 인상, 김일성 주석을 만나 본 인상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유사한 표현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박성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박성희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공소사실 중 각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함으로써 북한 노동당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8. 하순 일자 미상경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정치학회」 회의에 참석, 서울대학교 교수 길승흠으로부터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아 통일관련 문제를 주제로 한 남북한 학자들의 공동세미나 개최 가능성을 북한측에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동당의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인 김용순과 국제담당 비서인 황장엽 등에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요청하여 동인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1994. 10. 일자 미상경 위 길승흠에게 “북한의 황장엽과 김용순을 접촉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니 이 일을 보다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북한이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위 통일학술회의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조선 것들과 서방반동들이 공화국을 악랄하게 비방중상 선전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맞받아 공세적으로 나가 남조선이나 서방 것들이 조국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하기 위하여”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기로 마음먹고,

- 1995. 2. 28.부터 3. 11.까지 북한에 들어가, 위 김용순과 남·북·해외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통일학술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고, 동인으로부터 통일학술회의에 북한의 학자를 파견하겠으며, 회의장소는 북경으로 하라는 지령을 받고,

- 1995. 6. 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위 길승흠 및 건국대학교 교수 백영철과 위 사회과학원 산하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위장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김경남, 사회과학원 연구사로 위장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김관기를 만나 위 학술회의 관련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 남북한 통일 관련 공동세미나 명칭은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로 한다.
- 위 통일학술회의는 1995. 7. 31~8. 1. 북경 웨라톤호텔(長城大飯店)에서 개최한다.

- 참석 대상은 남한학자 15명, 북한학자 6명 및 해외학자 6명으로 한다.
 - 회의 주제는 '통일 3대원칙', '통일방식', '남북 화해협력 방안' 등으로 한다.
- 등을 결정하고,

- 1995. 7. 31.부터 8. 1.까지 중국 북경 웨라톤호텔(長城大飯店)에서 남·북·해외학자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의 원칙과 화해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바, 위 회의과정에서

· 북한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인 김구식은 '조국통일 기본원칙과 민족대단결'이라는 제목으로 ".....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을 달리하는 북·남·해외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는 공동의 통일강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강령에 대해 말할 때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강령을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김일성이 제안한 조국통일 3대 헌장(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 등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선전하고,

· 피고인은 토론과정에서 ".....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볼 때 역시 연방제적 구조라는 체제와 민족국가라는 우리의 공동의 이상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두개의 체제와 하나의 민족국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구성적인 조건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고,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인 박동근은 '조국통일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조국통일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특히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시어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리론을 독창

적으로 밝히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조국통일 3대원칙 등 북한의 통일방안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1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 1995. 8. 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및 1996. 3. 17.부터 1주일동안 각 북한에 들어가 위 김경남·김관기 등과 「제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고,

- 1996. 9. 13.부터 9. 15.까지 중국 북경 웨라톤호텔(長城大飯店)에서 남·북·해외학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바, 위 회의과정에서

· 위 김구식은 “.....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세기적 위인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어떤 사회력사적 운동에서든지 운동주체를 단합시키고 그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일찍이 민족대단결사상, 민족통일전선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 오시였으며, 1993년 4월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마련해 주시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통일전선사상과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을 단합시키는 데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며,”라는 등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통일정책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최금춘은 “..... 우리 민족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는 우리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제도적 통일은 후대들에게 맡기고 민족적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었습니다. 민족적 통일관은 사회제도보다 민족을 우위에 놓고 같은 핏줄, 같은 언어를 가진 단군민

족의 민족적 공통점에 기초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민족대단결 국가, 민족통일
련방 국가를 세우는 것을 조국통일로 보는 견해입니다. ……”라는 등 북한의 통일정책
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위 김관기는 “…… 세 번째로 집권세력과의 관계 문제인데, 조국통일을 위한 통일
전선에서는 집권세력과도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7·4공동성명발표
같은 것은 상층통일전선이 이루어진 하나의 실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변혁
을 위한 통일전선에서는 집권세력은 어디까지나 투쟁대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
게 우리가 민족통일전선사상을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그런 유형을
똑똑히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이 조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논의하고
어제 제가 기본 보고를 한 민족대단결사상은 어디까지나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통일전
선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라는 등 북한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북한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책임참사인 원동연은 “……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뚜렷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과 남 어느 누구도 자기의 제도와 정부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보다
더 합리적인 평화통일방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북과 남이 대결과 전쟁을 피하고 평
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련방제도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일방이 타방에게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피코 대결과 충돌을
가져올 것이며 그것이 격화되면 전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는 등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 북한 인민경제대학 교수인 정영춘은 ‘북남경제협력과 그 실현에서 제기되는 몇가
지 문제’라는 제목으로 “……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3

조에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할 데 대한 단결의 원칙을 천명하시었습니다. 북과 남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개별적인 계급, 계층이나 지역적 이익보다도 전민족의 공동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사업은 누가 누구에게 혜택을 입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은 북과 남의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평등의 관계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라는 등 북한의 통일정책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 피고인은 “…… 통일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세대의 희망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희망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 자기 세대 중심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학문공동체가 또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등 내용의 폐회사를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 1997. 8. 29.부터 8. 30.까지 중국 북경 소재 캠프스키호텔에서 남·북·해외학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 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바, 위 회의과정에서

· 피고인은 “…… 우리 민족이 과연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라는 자조적인 질문까지 던지기도 합니다. 저는 독일 통일의 명암을 지켜보면서 주체적 역량은 결국 밑으로부터 분출하는 민족의 지향과 의지를 하나의 훌륭한 결과로서 묶어 낼 수 있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문화적 역량의 총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 등 내용으로 기초발제를 하고,

· 북측단장인 김철식(사회과학원 제1부원장)은 “…… 우수한 민족성을 사랑해 온 우리 겨레가 남의 희생물로, 룡락물로 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에서는 최근에 주체성, 민족성을 지킬 데 대한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중대 로작이 나왔으며 얼마 전에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할 데 대한 로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정책 전반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북을 아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등 김정일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최성익은 “…… 조국통일도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사상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사상의 힘이 바로 민족자주의식입니다.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사대주의는 민족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는 독약입니다. 오늘 외세에 대한 사대주의가 통일문제 해결에 크게 해독을 끼치고 있는 실정에서 그것을 반대 배격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사대주의는 민족을 비굴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사대주의는 권력유지와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큰 나라와 결탁하고 그에 기생하는 반민족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대주의의 치욕스러운 역사는 삼국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라 사대충은 외세를 끌여들여 동쪽의 나라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고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통합되어 가던 민족통일의 대업을 좌절시켰습니다. ……” 등 김정일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책임연구사인 김만길은 '평화보장은 조국통일의 필수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 그러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민족의 힘을 합쳐 미국이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평화의 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침략과 간섭으로 전쟁의 수난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온 우리 민족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저들의 세계제패를 실현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전략과 요충지로 간주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습니다." 등 미국이 통일의 장애물이라고 선전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 1997. 9. 2.부터 9. 8.까지 북한에 들어가 위 김용순과 차기 통일 학술회의의 평양 개최 문제를 논의한 후 「제3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상황을 보고하고,

- 1998. 1. 초순 일자 미상경 북한에 들어가 위 김경남·김관기 등과 「제4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의 조기 개최 문제를 협의하여, 위 회의를 '1998. 2. 20.~ 2. 21. 북경 캠펜스키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 1998. 2. 20.부터 2. 21.까지 중국 북경 캠펜스키호텔에서 '남북 화해·협력의 새 시대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4차 남북해외학자통일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한바, 그 회의과정에서

· 피고인은 "..... 남쪽은 세계화가 갖고 올 긍정적인 결과만을 너무 기대하고 이에 대한 주체적 관리능력을 소홀히 하다가 소위 'IMF 사태'를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등 내용의 기초발제를 하고,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인 김혁철은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근본 담보'라는 제목으로 ".....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전적으로 로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민족대단결도 조국통일도 바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는 길에 있다 는 귀중한 진리를 명철하게 밝혀 주시었습니다. 참으로 민족자주나 외세의존이나 하는 것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이제는 남조선에서도 지난 기간의 북남관계사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정책전환을 하여 진실로 민족을 위하고 민족에 의거하는, 민족에 의하는 민족자주의 립장으로 돌아서야 하며 동족과 손을 잡고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민족자주적 립장으로 돌아서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외세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외세, 특히 미국을 <혈맹>으로, 심지어 <전쟁억제력>이라고 까지 하면서 미국을 무턱대고 믿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구시대적 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늘 좋다가도 래일 변하는 것이 외세, 특히 대국들입니다." 등 북한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북한 통일신보사 논설원인 리상혁은 '정치적 대결 상태 해소는 북남관계 개선의 선차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 우리에게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다져온 우리의 군사적 잠재력이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 수 있는 위력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로 단합된 위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기꺼이 바칠 결사의 각오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개혁, 개방>이라는 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없습니다. ……” 등 주체사상과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장용해는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마땅히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격화시키고 나라의 정세는 전쟁접경으로 끌여가는 무력증강과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 의세와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남조선에서 <남침위협>이란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전쟁정책을 실시하고 무력을 증강하고 외부로부터 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내세우는 기본명분은 이른바 <남침위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침위협>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남침>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호전계층과 그 추종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미국뿐 아니라 <신미일방위지침>에 따라 일본자위대무력이 자동적으로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과 만전쟁때와 같이 여러 추종국가들의 군대를 동원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 등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책동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4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 1999. 1. 16.부터 1. 18.까지 및 1999. 6. 29.부터 7. 6.까지 각 북한에 들어가 위 김경남 등과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의 주제 선정과 참가 대상자 선

별 문제 등을 협의하고,

- 1999. 10. 26.부터 10. 27.까지 북경 캠프스키호텔 별관 연사 센터 회의실에서 북한 대표인 위 김경남 등 남·북·해외 학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한바, 위 회의과정에서

· 피고인은 “…… 저는 우리 땅위에 이러한 상반된 정서와 분위기가 상당히 지배적이라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이러한 비정상적인 오늘의 상황을 하루 빨리 평화적 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남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북이 함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하루 빨리 전환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등 내용의 기초발제를 하고,

· 북측단장으로 북한 사회정치학학회 부회장인 원동연은 “…… 지금 북의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21세기의 가까운 년간에 기어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대진군 길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에 조국통일운동분야에서는 8·15를 계기로 북과 남, 해외 3자가 모여 전민족적 축제로 통일대축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북남로동자들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평양에 모여 통일축구, 통일농구를 하는 등 전례 없는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평양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생전의 조국통일 념원과 유훈, 불멸의 업적을 력사에 길이 전하기 위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비가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께서 나라의 통일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돌리고 계시며 그 실현을 위해 얼마나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등

북한체제와 북한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내용의 기초발제를 하고,

·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 위 원동연은 다시 '우리나라 통일문제의 주체적 고찰과 그 해결의 정책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 우리나라 통일문제를 주체적 립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우에 통일국가를 세우는 련방제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합니다. 련방제통일은 어느 일방의 리익이 침해될 것도 없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으며 통일 후 혼란이 올 것도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련방제통일이 비현실적이고 미완성형이라고 반대하지만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국제사회의 현실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가깝게는 여기 중국의 홍콩귀속을 통해서도 립증되고 있습니다." 등 북한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책임연구사인 김만길은 '자주평화는 조국통일의 선결과제'라는 제목으로 ".....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썩우려는 미국의 책동은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되었습니다. 미국은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침공할 목적 밑에 이미 오래전부터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것을 세우고 침략의 기회를 엿보아왔으며 얼마 전에는 보다 위험한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98》을 새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선반도에서 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문제》를 들고 전면적으로 번질 수도 있는 녕변지역에 대한 타격을 공공연히 획책했던 미국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또다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미싸일발사》로 우겨대면서 압력소동을 벌리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터무니없는 그 무슨 《인권》 문제라는 것까지 거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등 미국이 전쟁을 책동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홍광일은 토론과정에서 “..... 또 현실적으로 미국이 무력 증강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군축을 실현하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수십 차례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세아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세아에서는 엄연히 세력균형이 잡히고, 평화가 깃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 주한미군 철수를 선전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고,

- 2000. 4. 8.부터 4. 11.까지, 2002. 12. 7.부터 12. 14.까지 등 모두 5회에 걸쳐 북한에 들어가 위 김경남 등과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 학술회의」 개최 문제 등을 협의하고,

- 2003. 3. 26.부터 3. 27.까지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해외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 바, 그 회의과정에서

· 피고인은 ‘중정무편(重正無偏)의 통일마당을 열며’라는 주제로, “..... 드디어 오늘 우리들이 이 기쁨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각에, 그러나 우리 땅 위에 전쟁의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바늘 따라 실가는 것처럼 이라크 전쟁을 이야기 할 때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우리 반도의 위기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미국의 호전적인 매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라크전쟁을 열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까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등 내용으로 기초발제를 하고,

· 위 김구식은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는 제목으로 "..... 이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주인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할 데 대한 투철한 자주적, 창조적인 정신이고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 또 그 어떤 외세의 존도 반대하는 반외세, 반사대정신입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전 과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해박한 지식, 비범한 령도실력과 통쾌한 유모아, 숭고한 인간미와 고상한 도덕성을 다 갖추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등 김정일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된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체제 찬양 및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함으로써,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성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인 조선노동당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영구, 길승흠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권만학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7회, 제1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길승흠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통일학술회의 주최 백영철의 경위서 첨부)의 기재, 1994. 7. 1. 발급여권(수사기록 19권 944~961면), 1999. 6. 12. 발급여권(수사기록 19권 962~979면)의 각 기재,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1권(증 제16호증), "평화와 통일" 1권(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현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4. 8. 하순경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대학교 교수 길승흠

으로부터 남, 북한 학자들의 학술회의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북측에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사실, 이에 따라 1995. 7. 31.부터 같은 해 8. 1. 까지 중국 북경에서 제1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이하 '통일학술회의'라고만 한다)가 개최된 이래 2003. 3. 2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북한의 평양에서 제6차 통일학술회의가 개최되는 등 6차례에 걸쳐 통일학술회의가 개최된 사실(이하 제1차에서 제6차까지의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라고 한다), 통일학술회의의 남측 주최자는 제1회 경우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제2회 이후로는 한국통일학술포럼이었고, 북측 주최자는 북한의 사회정치학학회로서 남측과 북측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던 사실, 통일학술회의에 관한 개최를 남측과 북측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10여 차례 방북하여 위 통일학술회의에 관하여 북측 인사들과 논의하였고, 북경 등에서 열린 예비회담에도 수 차례 참석하였던 사실, 위 각 통일학술회의에서 북측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도 토론 과정 및 기조연설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은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위 통일학술회의에 북측 학자들을 참석시켜 자신들의 통일전략을 남측 학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1997. 5. 16.에는 독일 주재 북한 공작원 김경필에게 위와 같은 목적을 들어 남측이 제한한 통일학술회의에 응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있으면서도(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송두율을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 화일(SONG.BAK)(출력문서는 수사기록 6949~6950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의 개최를 주선하고 위 각 회의의 예비회담 및 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남북-해외동포학자 통일회의 남북대표단장 등 인터뷰”(99. 10. 28. 동아 5면)(수사기록 3283~3285면), “분단사상 첫 남북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소감”(95. 8. 4. 한국7면)(수사기록 3288~3290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1989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대한민국(이하 편의상 ‘남한’이라고만 한다) 전체에 통일의 열기가 확산되어 종교, 고고학,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 북한간의 학술회의가 북경에서 주로 열리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는 애초부터 남한의 학자인 김승흠의 제안에 의하여 제1차 통일학술회의가 개최된 이래 남한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6차 통일학술회의까지 계속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북한측에서는 위 통일학술회의를 중단하려고까지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던 사실, 남한측 참가자들은 위 각 통일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부(1998. 2. 28. 이전에는 ‘통일원’이었다, 이하 통일원 및 통일부를 모두 ‘통일부’라고만 한다.)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남, 북측을 중재하는 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1999. 1. 21. 이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다. 이하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을 모두 ‘국가정보원’이라고만 한다)과도 사전에 이 사건 통일학술회의에 참가할 학자 등에 대하여 조율한 바 있었던 사실, 제2차 혹은 제3차 이후의 위 각 통일학술회의에는 통일부 관계자나 국가정보원 담당자도 참석한 바 있으며, 회의를 마친 후에는 위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제1차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난 후 그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한 남한측 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최할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96. 4. 경 한국통일포럼을 결성하였던 사실, 제2차 통일학술회의부터는 남한측 백영철 교수의

제의로 통일학술회의 전에 개최하는 예비회담에서 양측이 발표할 논문의 내용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워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내는 이른바 '지퇴제거작업'을 하였고, 이 때 상당 부분의 북한측 논문이 수정되거나 그 발표가 취소된 상태에서 통일학술회의가 진행되었던 사실, 또한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는 매번 국내 언론사가 주관하였으며, 통일부(제3, 4, 5차 학술회의시),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자들 연구비 명목으로 그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지원받은 바도 있으며, 피고인이 남, 북한간에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방북 비용까지 남한측 대기업으로부터 협찬받았으며, 남, 북한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북한의 의견을 대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균형감 있게 이를 중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참석자들은 제6차 통일학술회의에서 피고인이 남측에서 제시한 핵문제를 의제로 다루도록 북측을 설득하였다고 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북한측의 발표 후에는 이에 대응하여 북한측의 의견을 반박하는 남한측의 발표도 있었고, 나아가 남한측에서 참석한 학자들도 적극적으로 남측의 주장을 피력한 바 있었던 사실 등 역시 인정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실제에 있어서 당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보안법의 전체 입법취지에 따라서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같은 법 제1조 제1항), 같은 법은 위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

1조 제2항) 이 법의 확대적용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남, 북한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 북한의 정부·당국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상호교류와 협력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남, 북한의 교류·협력관계를 규율하는 또다른 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의 역사관에 서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남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로 남한이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이고 남한정권이 반동적 파쇼정권이라고 매도하면서, 남한의 노동자,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지식인, 청년 학생, 도시 소시민 등에 이르는 각계 각층을 그 보조군으로 삼아서 반미, 반정부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비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써서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 선동하고, 통일방안으로 이른바 고려연방제를 제의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남한에서의 반공정권 퇴진,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는 외에,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평화 공세를 전개함과 아울러 국내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학생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획책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참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대화가 위장평화 공세의 일환이고 북한이 이를 선전, 선동의 기회로 삼고 있는 면이 있으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도 북한이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

를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면이 있음을 알면서도 남한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 개최를 제의받자 위와 같은 목적을 들어 북한측에 이에 응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전문, 제4조, 제5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북한은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 43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쌓고 이해를 넓히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정착과 통일정책에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 남한 사회는 이미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나 선전, 선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통일학술회의는 남한측이 먼저 제의하고 주도하였으며, 관계당국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후원 아래 이루어져 사실상 그 이후 이어진 일련의 남북화해분위기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 교류의 기회를 주선하는 것도 위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지도적 임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남한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정착과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하는 남, 북간의 대화, 교류를 위한 모든 주선, 주도행위가 위 법규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결과는 명백하게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한 위 헌법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당시 북한의 고위직 간부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해석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북한

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 형 이 유

1. 피고인은 1967년 독일로 유학한 후 유럽지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하는 이재원의 권유로 1973년 북한에 들어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하여 연구중이었던 피고인으로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를 연구해보고 싶은 학자로서의 욕심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입북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교포 및 유학생들 사회에서는 1967년 동백림 간첩사건의 여파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독재,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친북운동으로 변모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및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 입북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점에 대하여 단순한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이념이 투철하다고 검증을 받은 자만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회주의에 대하여 상당 기간 연구한 학자로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의 지도조직에 해당하는 당에 가입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소신에 반하여, 또는 별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그 중요성을 간과한 채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무

렵 이미 북한 체제에 상당 정도 경도되어 그 체제와의 일체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독일에 돌아온 이후 자신의 입북사실 및 북한 노동당 가입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히 함구한 채, 재독 교포들이나 해외유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신반대 및 민주화 운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통하여 친북세력의 양산을 바라는 북한의 목적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쳐왔고, 또한 윤이상, 김길순 등과 함께 '한국학술연구원(KOFO)'을 설립하여 북한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주체사상 관련 책자와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면만 기술한 국내이념서적들을 비치해 놓고 유학생 등을 상대로 북한 체제의 우수성에 관한 강연을 하는 등 직접적인 친북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무렵인 1988년경에는 독일인과 공저로 "평화로운 게임을 할 수 없는 나라, 남한"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정치 현실 및 사회의 모순을 기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집필한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올림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기술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책의 내용은 그 책 전체의 취지 및 제목과 동떨어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독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부적합할 정도로 사회적 모순이 많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독일의 체육계 인사들을 초빙하여 이에 관한 강연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활동 중 북측에서 제공한 항공편으로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외교부장인 허담이나 조평통 부위원장인 전금철 등의 북한 고위 간부들과 면담하고, 주체사상에 관한 강의를 듣거나 주체사상에 관하여 토론하였으며, 상당액의

경비와 선물까지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학자의 저술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하여는 가혹한 비판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이를 선전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저술활동을 펼쳐 왔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저술 활동을 통하여 내세운 주장들, '내재적 접근법'이나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등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 상황, 피고인의 학자로서의 경력, 진보운동가로서의 이력 등과 맞물려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주체사상파'에 대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사상파'가 운동권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대중으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였고 그 후에는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선임되었으며,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 특히 피고인이 노동당 간부로 선임된 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품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자신을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인'이라고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북한 당국의 견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고,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거부감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나 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환상을 가지게 하였다.

북한의 간부의 지위에까지 오른 피고인이 신분을 숨기고 이와 같이 북한에 편향된 저술활동을 한 것은 올바르고 냉철한 남, 북한의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남북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있는 이래

1991. 12. 남북한의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위 합의서가 1992. 2. 19. 발효되었으며 2000. 6.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남북한 당국간에 교류와 협력을 위한 대화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하여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절실히 요망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이나 역으로 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활성화될 수 있고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함이 마땅할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에 귀순한 황장엽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김철수'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정체가 드러났으면,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자신의 실체 및 북한과의 연계를 밝히고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의 이념을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을 표방한 북한의 이념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사상 및 입장을 명백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황장엽의 이러한 진술을 모략이라고 되받아치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오히려 황장엽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고 대한민국 언론과의 회견 등의 기회에 계속적으로 자신이 '김철수'라는 사실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진정한 '경계인', 즉, 남과 북,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자세를 견지한 학자였다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그 사회의 이념인

주체사상 및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경계인'이 되지 못하고 다만, '경계인'으로 포장만 한 채 일방적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찬양하는 저술활동을 하였고,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심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거둔 독일 교수이고 스스로 '경계인'임을 자처하며 남과 북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 입장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저술활동을 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대체로 피고인의 신분, 입장을 신뢰한 결과, 학계에서 피고인의 글을 대상으로 진지한 논쟁을 벌여 왔고 우수한 언론이 피고인의 기고에 지면을 할애하고 출판사가 피고인의 책을 발간하였으며, 무엇보다 적지 않은 수의 독자들이 피고인의 글과 책을 객관적인 학자의 학문활동의 결과로 알고 읽어 영향을 받아 왔는바, 피고인은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를 악용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을 기망한 셈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태도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국가의 안보에 위태로운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반면, 피고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당시 암울했던 대한민국 사회에 염증을 느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더 나아가 북한에 경도된 결과 북한 노동당에까지 가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책자나 기고문에는 기재한 바 없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도 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북한 노동당의 고위 간부로 선임되었다고는 하나 북한 내에서 특별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으며 그나마도 김일성 사후부터는 별다른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별다른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남, 북한 학자들간에 통일학술회의를 주선하여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의도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나아가 우리의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아야 하는바,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도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 상당한 정도 사상의 공격에 대한 내성을 갖추었고 포용력, 다원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모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특히 1988. 12.부터 199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저술활동으로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결국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스스로 귀국하였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점,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어느 정도 북에 편향되었던 점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비교형량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이 어느 면에서는 남북분단의 희생물로 평가되어질 수 있고, 피고인이

비록 북한 편향의 저술활동을 하여 왔으나 이미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된 마당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아, 현재 독일 국적으로 일정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온 독일 교수 신분의 피고인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 견해에 일면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고도 판단되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그간의 행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포용과 관용은 피고인이 그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과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03. 9. 21. 입국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취한 태도는 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형의 실행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_____
	판사	임은하 _____
	판사	장성훈 _____